

[사업주 훈련비용 전자계산서 발행 & 회계처리 방법]

본 교육원은 면세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가 발행됩니다.

발행 시 기업에서 실제 결제해야 하는 부분은 없으나, 산업인력공단의 권고사항과 관련법에 의거하여 사업주훈련비용 및 지원금 계산서 발급을 사업주에게 하게 되어있습니다.

참고 : 법인세법 제121조【계산서의 작성·발급 등】.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【계산서의 작성·발급 등】

- 전자계산서는 한 과목당 전자계산서 2개가 발행됨
- 기업 규모별 자부담금 비율 (**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 13조 별표 4**)

우선지원기업	1000명 미만 기업	1000명 이상 기업
10%	20%	60%

1번 전자계산서(자부담금)

사업주훈련 교육비의 자부담금 납부 후 전자계산서(영수) 발행
자부담금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음.

2번 전자계산서 (훈련비 지원금)

교육이 수료된 인원에 대하여 정부지원 환급금 지급에 대한 전자계산서
실제로 기업에서 지불하지 않았으나 기업에 책정된 교육비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행해야함
(비고: 정부지원금)

본원에서 산인공에 훈련비지원금 신청 → 본원으로 입금(교육 종강 후 약 2~3개월 소요)
훈련지원비 수령 후 → 본원 매출계산서로 전자계산서 2번 발행

※100% 지원되는 훈련과정일 경우엔 자부담금이 없으므로 2번 전자계산서(훈련비 지원금)만 발행이 되며, 정부지원금 등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.

예시) 교육비 10만, 우선지원기업

A기업이 10%의 자부담금인 1만원을 교육원에 수납 후 전자계산서(영수) 발행
훈련종료 후 9만원의 환급금이 교육원에 지급되며 9만원에 해당하는 전자계산서 발행
1만원짜리 계산서와 9만원짜리 계산서가 2가지가 발행됨

■ 전자계산서(훈련비지원금) 회계 처리 방법 안내

- ▷ 회계 : “매입계산서”이므로 비용은 교육훈련비로, 상대계정은 “잡이익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.
-회사의 별도 계정과목이 있을 경우 사용가능. (예)영업외수익_국고보조금, 정부지원금 등)
(차) 교육훈련비 0000000 / (대) 잡이익 0000000
- ▷ 세무 : 부가세 신고시 매입계산서 합계표에 (면세)계산서 한 장 추가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.
- ▷ 자금 : 훈련비의 100% 노동부 지원(입금완료 상태임)이기 때문에 지출하실 금액은 없습니다.